

신용정보관리규정

으뜸자산운용(주)

신용정보관리규정

제 정 2021. 07. 30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(이하 “관련 법령”)에 따라 신용정보처리의 수집·처리·이용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신용정보”라 함은 법 제 2 조에서 정한 정보로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, 공공정보 등을 말한다.
2. “개인신용정보”란 제 1 호의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.
3. “신용정보주체”라 함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.
4. "신용정보제공·이용자"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.
5. "신용정보집중기관"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·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.
6. “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”이라 함은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

제 3 조(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의 지정) 준법감시인은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으로서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
제 4 조(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의 업무)

- 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용정보의 수집·보유·제공·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2. 신용정보의 수집·보유·제공·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 3.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
 4.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5. 임직원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
 6.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
 7.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② 회사는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정 및 변경 사실, 성명과 부서의 명칭,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신용정보관리·보호 업무의 보고)

- ①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제 4 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[별지 서식 제 1 호]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1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 법 제 20 조제 4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
 2. 제 1 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

제 3 장 신용정보 수집·조사 및 활용

제 1 절 신용정보의 처리

제 6 조(신용정보 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원칙)

-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·조사 및 처리 목적을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·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리고 [별지서식 제 2 호]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 법 제 15 조 2 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2.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
 3.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 4.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 사실 고지
 5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(관계법령,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, 해지권·해제권·취소권의 행사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)에 관한 사항
- ③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 7 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

- ① 회사가 대출, 보증에 관한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[별지서식 제 2 호]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 2.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 3.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
 4.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(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)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 5.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 사실 고지
 6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(관계법령,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, 해지권·해제권·취소권의 행사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)에 관한 사항
-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거래 또는 계약이행을 위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·활용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8 조(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등)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개인과 거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용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에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 9 조(개인식별정보의 제공·이용)

- ① 회사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주소, 다음 각 호의 번호, 성별,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이하 “개인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제공·이용하는 경우에는 제 7 조 및 제 8 조를 준용한다.
 - 1. 「주민등록법」 제 7 조제 3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
 - 2. 「여권법」 제 7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여권번호
 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
 - 4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 31 조제 4 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 - 5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
- ② 회사가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근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및 관리

제 10 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위탁)

- ① 회사는 다른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·조사 및 처리를 위탁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탁하지 아니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, 유지,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회사가 전항 단서에 따라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, 위탁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신용정보 관리기준 및 보안조치)

- ① 회사는 신용정보의 수집·처리·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신용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)

-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[별지서식 제 3 호]에 따른 등록·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(고용관계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:
 2.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거나 회사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
 3. 제 1 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: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
- ③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(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·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)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 다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13 조(개인신용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) 회사는 고객 신용정보의 오·남용 방지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. 또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

제 1 절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

제 14 조(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)

- ① 회사는 법 제 31 조에서 정하는 신용정보활용체제(별표 제 1 호)를 공시하여야 한다.
 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
 2. 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, 제공 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3.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,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
 4.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 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 6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또는 신용정보관리·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, 부서 및 연락처
- ② 회사가 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 1. 점포·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

2.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

제 2 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
제 15 조(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)

- ①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보를 요구 받은 경우 회사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최근 1 년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내용은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우편요금, 배송요금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 16 조(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 등)

-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도 평가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하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권리 내용, 행사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 1 개월 이내에 서면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사후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 17 조(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)

- ①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회사가 제 1 항에 의한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 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- ④ 회사는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 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제 3 절 신용정보 누설 통지

제 18 조(신용정보 누설통지 등)

- ① 회사는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1.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
 2.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
 3.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 4.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
 5.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취한 뒤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제 1 조(경과규정)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신용정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. 단, 이 지침 시행 이후 신용정보를 새로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.

제 2 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(2022년 2월 9일)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제 1 호>

신용정보활용체제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
I.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1. 이용목적

- 1)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
- 2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
- 3)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: 개인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 번호, 주소, 대표자 성명 등
- 2) 신용거래정보
 - 가) 개인신용거래정보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,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 등
 - 나) 기업신용거래정보: 가계당좌·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 정보, 어음·수표 부도정보, 대출·지급보증, 신용공여현황 등
 - 다) 금융질서 문란정보: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 - 라) 신용능력정보: 개인의 직업,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
 - 마) 공공기록정보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II. 제공대상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신용정보 제공대상
 - 1)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 - 2)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, 개인신용거래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, 신용능력정보
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
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
IV.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(해당사항 없음)
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
1. 신용정보 제공·열람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2.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: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등의 철회권: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: 준법감시인

[별지 서식 제 1 호]
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

문서번호:

수 신: 금융감독원장

참 조: 00 검사국장

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제 22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대표이사, 이사회에 대한 보고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상호		대표자	
본점 소재지		신용정보관리·보호인	
1. 법 제 20 조제 4 항 각호의 업무수행 실적			
구분	이행일(기간)		주요 내용
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			
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			
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			
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			
신용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			
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			
2. 법 제 20 조제 5 항에 따른 보고 실적			
보고 주기			
보고 내역			
구분	보고일	주요 보고사항 및 후속조치 등	
대표이사			
이사회			

※ 첨부서류 1.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 보고서

2.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(첨부서류 1.과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)

0000 년 00 월 00 일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_____ 서명 또는 (인)

[별지 서식 제 2 호] 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대한 동의서

1.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☐ 필수적인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- 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당사(당사 설정, 운용하는 펀드)와의 거래 관계의 설정·유지 및 이행 관리
 - 법령상 의무이행 등
- ☐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
 - 성명, 개인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/여권번호/면허번호/외국인등록번호/국내거소신고번호)
 - 연락처(주소/ 전화번호/ 이메일 주소)
 - 신용거래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
- ☐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 일부더 관련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(계약기간의 만료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소멸 시)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 상거래 관계 효력의 종료시점 이후 에는 분쟁해결, 민원 처리, 법령상 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5 년간 보유
- ☐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거래관 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.

☐ 선택적인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(있는 경우)

*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선택적 수집·이용이 제공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 동의서 징구

- ☐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- ☐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
- ☐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- ☐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

으뜸자산운용주식회사는 「신용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·이용 등 처리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 등 처리	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
선택항목의 수집·이용 등 처리	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

2.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☐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

- 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신용정보집중기관
- 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-본인의 신용판단
-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수행
- ☐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항목
 - 성명, 개인식별번호(주민등록번호/여권번호/면허번호/외국인등록 번호/국내거소신고번호)
 - 연락처(주소/ 전화번호)
 -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
 -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
- 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·이용
- ☐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합니다.

☐ 선택적인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(있는 경우) *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 제 3 자 제공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 동의서 징구

- 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- 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- ☐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
- 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
- ☐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
- ☐ 관련 거래 종료일(채권 소멸 시)

3. 개인식별번호의 수집·이용 (또는 제공)에 관한 사항

으뜸자산운용주식회사는 「신용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식별번호를 수집·이용 (또는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개인식별번호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
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

20 년 월 일

본인은 상기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표기하였으며 관련 내용(관련 권리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포함)을 설명 듣고 서면으로 고지 받았습니다.

동의자: (서명) 또는 (날인)

[별지 서식 제 3 호]

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장

신용정보주체명 :

구 분	수집 이용	수집일	수집·이용 항목	수집·이용 부서	보유 및 이용 기간	이용목적	정보취급자 (담당자)	폐기일·분 리보관일
	제공	제공일	제공항목	제공 대상 자	보유 및 이용 기간	제공목적		

- ※신용정보주체별 개별건으로 작성·관리
- ※ 정보취급자란에는 운용부서 담당자를 기재
- ※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은 정보취급자의 결재라인에 있는 자 및 준법감시부서 담당자로 제한
- ※ 상거래 관계 효력 종료시점 이후에는 5 년간 분리보관